

2020년도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



영 동 군

(기 획 감 사 관)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0. 4. 6. ~ 4. 10.(5일간) / 2017. 3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관련법령 및 정관 기본규정 이행 실태
- 출연금 및 수입금 관리운영 실태 등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20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20건 (주의 9건, 시정 9건, 권고 2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1건 / 22,115,020원
- 신분상 조치 : 2건 / 5명(징계요구 1, 주의요구 1, 훈계 3)

《 수범사례 》

■ 축제관련 우수 수상 실적

-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수상(영동난계국악축제 3년 연속 수상) 등

■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발 빠른 위기대처

- 2018년 태풍 솔릭, 태풍 콩레이, 2019년 ASF(돼지열병) 등

■ 공직자 축제 동원 최소화

- 동원업무에서 벗어나 공직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마련

■ 문화향유 및 문화공헌 가치사업 확대

-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축제의 문화적 가치 상승 효과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20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총 20건	주의 9 시정 9 권고 2	징계1 주의1 훈계(공무원)3	회수 1건 22,115,020원
1	인사,복무 급여	◦ 특별휴가(포상휴가)실시 부적정	주의		
2		◦ 근무성적평정 기준 부적정	시정		
3		◦ 인사, 보수 규정 개정 부적정	시정		
4		◦ 외부강의 등 미신고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시정	징계1	
5		◦ 연봉제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타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주의1 공무원훈계3	회수 22,115,020원
6		◦ 업무 외 사유 출장 부적정	주의		
7	회계, 계약	◦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시정		
8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시정		
9		◦ 여유자금 운용 소홀	시정		
10		◦ 영동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따른 관리 부적정	시정		
11		◦ 예산집행(예산이용)의 부적정	주의		
12		◦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13		◦ 포도축제 행사대행용역 변경계약체결 부적정	주의		
14		◦ 심사위원회 심사회피제 운영 및 회의록 작성 소홀	시정		
15		◦ 4대축제 사전감리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16		◦ 경호·경비 및 교통관리 용역(계약)집행 부적정	주의		
17	수입금 및 기타	◦ 영동축제관광재단 수익금 운영 부적정	주의		
18		◦ 위임 전결 규정사항 위반	주의		
19		◦ 2019년 축제별 대행사 선정 지연	권고		
20		◦ 지출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권고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현 황】 특별휴가(포상휴가)실시 부적정

○ 포상휴가 실시 현황

연번	실시연도	포상계획 결재일	포상사유	대상자	최종결재자 (직위, 성명)	비고
1	2018년	18.10.23.	난계,와인축제 개최에 따른 직원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	전직원 6명	상임이사 오 ○ ○	
2	2019년	19.10.10.	난계,와인축제 개최에 따른 직원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	전직원 8명 (기간제 2명 포함)	상임이사 오 ○ ○	
3	2020년	20.01.06.	사유 미기재	전직원 7명	사무국장 이 ○ ○	

【위법부당사항】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취업규칙」 제20조의2(특별휴가) 제3항 에 의하면 ‘이사장은 직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대상자의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 제4조에 따른 [별표] 위임 전결 사항에 의하면 ‘복무-6.직원포상 및 징계(추천 포함)’ 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재)영동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고 한다.)은 상기 ‘포상 휴가 실시 현황’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도와 2019년도 난계, 와인 축제 개최에 따른 직원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이유로 특별휴가(포상 휴가)를 실시하겠다는 내부결재 공문을 재단이사장이 아닌 상임이사로부터 최종 결재를 득하여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무국장을 최종 결재자로 내부결재 공문을 시행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근무성적평정 기준 부적정

【현 황】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직원 인사규정」을 2017. 01. 10. 제정해 2019. 11. 25.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직원 인사규정」 제24조(승진) 제1항에 의하면 ‘승진은 직원의 근무성적, 경력, 포상 및 자격 등 종합적인 평정에 의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26조(근무실적평가) 및 제27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단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서’ 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재단에서는 상기 ‘근무성적평정서’ 상에 3. 직무수행능력 평정(배점 50점) - 평정요소 ‘직무수행태도(배점 10점)’ 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지각, 무단이석 등’ 을 평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직무수행능력 평정에서 배점기준으로 20%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감독하고 근무성적평정을 해야 하는 상임이사가

비상근이라는 문제가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 개정이나 근태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없이 현재까지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근무성적평정 요소 중 직무수행태도를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정한 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사·보수 규정 개정 부적정

【현 황】

- 영동군은 축제 및 관광관련 위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운영을 위한 정관 및 제 규정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2017. 1. 10. 제정 하였음.
- 아울러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제 규정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규정” 이란 재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 의무, 제반업무 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재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직원 인사규정」 및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보수규정」을 2017. 01. 10. 제정하여 2019. 11. 25. 일부 개정하기 까지 수차례 개정하면서 운용하고 있음.

【위법부당사항】

- 그런데 재단은 2019. 11. 25. 제35차 임시이사회에 ‘재단 직원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을 상정하여, 해당 규정 제24조(승진) 제2항을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이 변경되었거나 영동군(담당 부서)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제하였음.

○ 또한 같은 날 ‘재단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을 상정하여 해당 규정 제6조(연봉 결정)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조항을 삭제하였음.

상기 조항은 「2019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4페이지)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소요는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로 산정하고, 전 직원이 완전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역내 평균호봉승급분 인상률을 감안하여 1.4%이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패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연도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 규정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동 규정을 개정 하였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인사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승진 및 연봉결정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징계요구

【제 목】 외부강의 등 미신고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현 황】

- [붙임1] 외부강의·회의 등 미신고 현황
- [붙임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위법부당사항】

- 「재단법인 영동축제공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영동축제공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며,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영동축제공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붙임2]에 따른 금액을 말하며,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들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직자들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법령과 전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단은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상한액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무를 겸할 경우에는 겸직 가능여부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붙임1]의 외부강의·회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팀장 A가 2017년 2회, 2018년 8회, 2019년 20회 등 잦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주요 내용이 영동축제관광재단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축제 이벤트경영사 자격증, **대 관련 강의, 심사회의 참석 등으로 고유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재단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이 □□팀장에게만 집중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외부강의 등을 제한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직원 외부강의 및 회의 등 참석 시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신분상 조치

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사전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한 □□팀장 A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외부강의·회의 등 미신고 현황

[단위 : 원]

연번	대상자 (직, 성명)	유형	내역	요청자	외부강의, 회의일시	대 가	출장여부	출장비 수령여부
1	팀장 A	강의(외부특강)	문화관광축제의 기획가 가치	제주시, 제주축제학교	2017.09.27. (18:00~20:00)	250,000	여	부
2	팀장 A	회의 (자문-지정토론)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거창문화재단의 지향점	(재)거창문화재단, 한국축제포럼	2017.10.14 (15:00~18:00)	-	여	부
3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축제문화와의 가치와 비경제적 효과	건국대학교, 한국축제포럼	2018.02.02. (16:00~18:00)	200,000	여	부
4	팀장 A	강의(외부특강)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가이드-영동축제 소개	한국관광공사	2018.05.16. (15:00~16:00)	-	여	부
5	팀장 A	강의(외부특강)	금산군청 지역리더과정 축제특강-영동축제 소개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2018.06.08. (19:00~20:00)	-	여	부
6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지역 청년문화기획자 축제전문가 육성과정	군산시청, 군산시민예술촌	2018.06.09. (15:00~17:00)	250,000	부	부
7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지역 축제의 비경제적 문화가치	건국대학교, 한국축제포럼	2018.07.09. (16:00~18:00)	200,000	부	부
8	팀장 A	회의(학회 참석)	한국상품학회-학술대회 회의 참석	한국상품학회	2018.11.02. (11:00~18:00)	-	여	부
9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충남 예산군 축제이벤트경영사 자격증 과정	예산군청,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2018.11.13. (19:00~21:00)	350,000	여	부

연번	대상자 (직, 성명)	유형	내역	요청자	외부강의, 회의일시	대 가	출장여부	출장비 수령여부
10	팀장 A	회의 (자문-지정토론)	제1회 세종문화예술포럼 학술세미나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포럼	2018.11.30. (14:00~16:00)	-	여	부
11	팀장 A	회의(자문)	2019 홍성역사인물축제 축제추진위원회 자문회의 참석	홍성군청	2019.02.25. (17:00~18:00)	200,000	여	부
12	팀장 A	회의(평가)	2019 정읍벚꽃축제 대행사 선정 심사위원 참석	정읍시청	2019.02.28. (15:00~16:00)	200,000	여	부
13	팀장 A	회의(자문)	2019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 상반기 현장평가단 회의 참석	경상남도	2019.03.14 (14:00~16:00)	250,000	여	부
14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충남 홍성군 축제이벤트경영사 자격증 과정	홍성군청	2019.04.01 (17:00~19:00)	350,000	여	부
15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전북 김제시 축제이벤트경영사 자격증 과정	김제시청	2019.04.09. (19:00~21:00)	350,000	여	부
16	팀장 A	회의(자문)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회의 참석	함양군청, 엑스포조직위원회	2019.05.20. (14:00~16:00)	200,000	여	부
17	팀장 A	회의(학회참석)	한국상품학회 학술대회 회의 참석	한국상품학회	2019.06.01 (13:00~17:00)	-	여	부
18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청주야행 -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기획	충북문화재연구원	2019.08.07. (13:00~14:00)	250,000	여	부
19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충남 서산시 축제이벤트경영사 자격증 과정	서산시청	2019.08.08. (19:00~21:00)	350,000	여	부

연번	대상자 (직, 성명)	유형	내역	요청자	외부강의, 회의일시	대 가	출장여부	출장비 수령여부
20	팀장 A	강의(외부특강)	5기 경상남도 문화리더 육성과정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9.09.05. (19:00~21:00)	300,000	여	부
21	팀장 A	강의(외부특강)	2019년 창원축제학교	창원시청	2019.10.10. (19:00~21:00)	300,000	여	부
22	팀장 A	회의(자문)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회의 참석	함양군청, 엑스포조직위원회	2019.11.05. (16:00~17:00)	200,000	여	부
23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전북 김제시 축제이벤트경영사 자격증 과정	김제시청	2019.11.12. (19:00~21:00)	350,000	부	부
24	팀장 A	강의(외부특강)	주민이 만드는 거리축제	김천시청	2019.11.19. (19:00~21:00)	250,000	부	부
25	팀장 A	회의(학회 참석)	축제위기시항에 따른 정책제안	한국축제포럼	2019.11.30. (16:00~18:00)	-	여	부
26	팀장 A	회의(평가)	2019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 하반기 현장평가단 회의 참석	경상남도	2019.12.17. (14:00~17:00)	300,000	여	부
27	팀장 A	강의(외부특강)	2019년 2학기 **대 관광축제대학원 강의	**대학교	2019.09.01. ~ 12.31(3회)	300,000 (1회당 100,000)	여	부
28	팀장 A	강의(외부특강)	2020년 1학기 **대 학부강의 - 체험관광실무	**대학교	2020.03.02~현재	-	여	부

[붙임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연봉제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타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1. 영동축제관광재단 보수규정<개정 2019. 07. 19.>

[별표 3]

기타수당 지급 기준표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 1.5/209 × 8시간 × 휴일근무일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지급 할 수 없음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 × 1.0/209 × 8시간 × 미사용일수		
가족수당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함		
공무원과건수당	·9~7급 : 월 200,000원 ·6급 : 월 300,000원	과건근무기간 산정방법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 15일 미만은 절사	
정액급식비	(신 설)	·월13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재단 정규직 근로자 지급
명절휴가비	(신 설)	·연120% (설(구정), 추석 각 60%씩)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재단 정규직 근로자 지급
정근수당	(신 설)	·공무원 수당 규정 준용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재단 정규직 근로자 지급
복지수당	(신 설)	·영동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급 규정 준용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재단 정규직 근로자 지급

[별지 제1호 서식](뒷면)

직원 연봉제 산출내역

"문화를 노래하는 즐거운 축제"

직원 연봉제 산출내역

현 행		연 봉 제 구 성 체 계		
부 기 별	금 액	구 분	지 급 시 기	지 급 기 준
기본급(본봉)		기본 연봉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본봉 및 연수에 따른 % 적용) 정액급식비 - 130,000원 / 월 직급보조비 - 가급 : 140,000원 / 나급 : 105,000원 / 다급 : 105,000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장근무수당		기타 수당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 규정에 따라 개인별 지급
야간근무수당			매월	
휴일근무수당			매월	
연차휴가수당			12월	
가족수당	/ 1 인		매월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시금액		분기별	

2. 기타수당(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지급현황

연번	성 명	2019년	2020년	비고
계		11,275,700원	10,839,320원	
1	A	3,513,020원	2,986,670원	
2	B	2,587,560원	1,983,990원	
3	C	2,587,560원	1,983,990원	
4	D	2,587,560원	1,983,990원	
5	E	-	1,900,680원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보수규정」 [현황 1]을 2017. 01. 10. 제정해 2019. 11. 25.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재단은 2017. 05. 23. 채용된 계약직 직원 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확정하였음.
- 아울러, 정규직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운영하고 매년 1월 연봉책정을 하며, 연봉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연봉, 기타수당 및 퇴직금으로 구성됨과 직원 연봉제 산출내역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이 연봉제 기준기본급에 포함됨을 보수규정에 명시 함.
- 또한, 2019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22페이지)에는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 규정과 지침 등에 비춰볼 때 재단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연봉에는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연봉에 포함된 수당은 재차 신설하지 않아야 함.
- 그럼에도, 재단은 2019. 7월 임시이사회에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을 상정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당 지급 근거를 명문화한다 하면서 기타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이사회 심의·의결 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조치사항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해당없음” 으로 안건을 작성하였으며, 소관부서인 국악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도 합의로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심의 없이 기타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받아 동 규정을 개정하였음.
- 그 결과 재단은 정규직 직원에게 연봉제(기본연봉에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포함)로 보수를 지급하고도, [현황 2]와 같이 기타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을 2019년에는 11,275,700원, 2020년에는 10,839,320원 등 총22,115,02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또한, 국악문화체육과는 재단 소관부서로서 재단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 규정과 지침 등에 비춰볼 때 기본연봉에는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연봉에 포함된 수당은 재차 신설되지 않도록 재단을 관리감독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재단 보수규정을 상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중복지급된 기타 수당 총22,115,020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 신분상 조치

관련자 □□팀 차장 B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국악문화체육과장은

재단 소관 부서로서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 신분상 조치

관련자 에게는 주의[훈계]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6급 C

□□6급 D

□□7급 E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 외 사유 출장 부적정

【현 황】

1. 업무 외 사유 부적정 출장 내역

연번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1	사무국장	A	2019-05-14(14:00) ~ 2019-05-14(18:00)	김천시	김천시 업무 협의 (행사 관련 업무)
2	사무국장	A	2019-05-20(13:00) ~ 2019-05-20(18:00)	충남 홍성	축제인력양성과정 참석
3	사무국장	A	2019-06-01(09:00) ~ 2019-06-01(18:00)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한국상품학회 - 축제관련 학회 교육 참가
4	사무국장	A	2019-07-26(14:00) ~ 2019-07-26(18:00)	김천 문화예술회관	스포츠 관광 토론회 참석
5	사무국장	A	2019-08-13(16:00) ~ 2019-08-13(18:00)	김천신문사	업무협의
6	사무국장	A	2019-08-26(13:00) ~ 2019-08-26(18:00)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업체 선정 심사위원 참석
7	사무국장	A	2019-08-28(13:00) ~ 2019-08-28(17:00)	경북 김천시	방문객 물품 전달
8	사무국장	A	2019-09-09(11:00) ~ 2019-09-09(18:00)	대전 배재대학교	추석명절 인사 및 축제컨설팅 관련 협의
9	사무국장	A	2019-09-10(13:00) ~ 2019-09-10(16:00)	김천시	김천시 유관기관 축제전 사전 면담
10	사무국장	A	2019-10-31(16:00) ~ 2019-10-31(20:00)	김천시청	김천시 정책자문회의 (관광자문) 참석
11	사무국장	A	2020-01-23(14:00) ~ 2020-01-23(18:00)	김천시 일원	업무협의 및 명절인사
12	사무국장	A	2020-03-13(09:00) ~ 2020-03-15(18: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주들불축제 견학
13	사무국장	A	2020-04-08(14:00) ~ 2020-04-08(16:30)	김천대학교	김천대학교 운영회의 참석
14	팀장	B	2018-04-27(10:00) ~ 2018-04-27(18:00)	부여군청	부여서동연꽃축제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참석

연번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15	팀장	B	2018-05-14(12:00) ~ 2018-05-14(16:00)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전통시장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용역사 선정 평가위원 참석
16	팀장	B	2018-05-18(09:00) ~ 2018-05-19(18:00)	서울 세종대학교 및 서울 강동구청	1. 한국상품학회 학술세미나 토론자 참석 (세종대학교) 2. 서울도시농업박람회 모니터링 (서울강동구)
17	팀장	B	2018-05-25(10:00) ~ 2018-05-25(18:00)	금산군청	금산인삼관영상물 정비사업 심사위원 참석 - 금산군청 2층 상황실
18	팀장	B	2018-05-29(09:00) ~ 2018-05-29(18:00)	인제군문화재단 (4층) 소회의실	인제군문화재단 - 인제바퀴축제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요청
19	팀장	B	2018-11-02(11:00) ~ 2018-11-02(18:00)	경기도 화성 - 협성대학교	한국상품학회 토론자 참석 - 축제조직관련 토론
20	팀장	B	2018-11-13(14:00) ~ 2018-11-13(18:00)	충청남도 예산군청	예산군청 축제전문 자격과정 개설(지역주민 참여 축제아카데미) - 강의요청
21	팀장	B	2019-01-14(09:00) ~ 2019-01-14(18:00)	충남 보령	업무협의
22	팀장	B	2019-01-30(15:00) ~ 2019-01-30(18:00)	대전	업무협의
23	팀장	B	2019-02-01(13:00) ~ 2019-02-01(17:00)	영동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명절 인사
24	팀장	B	2019-02-11(13:00) ~ 2019-02-11(18:00)	충남 금산군청	업무협의
25	팀장	B	2019-02-25(09:00) ~ 2019-02-25(16:00)	홍성군청	홍성역사인물축제 취진위원회 회의 참석
26	팀장	B	2019-02-28(13:00) ~ 2019-02-28(18:00)	전라북도 정읍시청	심사위원 위촉
27	팀장	B	2019-03-14(09:00) ~ 2019-03-14(18:00)	경상남도 - 도청 소회의실	2019.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 현장 평가위원 위촉식 및 평가계획 설명회 참석
28	팀장	B	2019-04-01(09:00) ~ 2019-04-01(18:00)	홍성군청	홍성군청 - 축제아카데미 강의요청
29	팀장	B	2019-04-02(09:00) ~ 2019-04-02(18:00)	경남 함양군청	2020 함양 산삼향노화 엑스포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 참석
30	팀장	B	2019-04-09(09:00) ~ 2019-04-09(18:00)	김제시청	김제 축제아카데미 주민교육 요청
31	팀장	B	2019-05-20(10:00) ~ 2019-05-20(18:00)	금산군청과 함양군청	축제관련 업무협의(금산군청)와 함양산삼엑스포 조직위원회 회의참석 요청
32	팀장	B	2019-06-01(09:00) ~ 2019-06-01(18:00)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한국상품학회 - 축제관련 학회 교육 참가
33	팀장	B	2019-07-04(11:00) ~ 2019-07-04(18:00)	충남 홍성군청	2019. 홍성역사인물축제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 참석
34	팀장	B	2019-07-22(11:00) ~ 2019-07-22(18:00)	대전 배재대학교	영동 4대축제 감리관련 정산서류 준비 미팅

연번	직급	성명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35	팀장	B	2019-08-01(16:00) ~ 2019-08-01(18:00)	대전 배재대학교	영동 4대축제 감리 - 영동난계국악축제
36	팀장	B	2019-08-07(11:00) ~ 2019-08-07(17:00)	충북문화재단연구원	2019. 청주야행(문화재 야행) 대학생 팀메이트 교육
37	팀장	B	2019-08-08(14:00) ~ 2019-08-08(18:00)	서산문화원	축제이벤트경영사 3급과정 교육
38	팀장	B	2019-09-05(16:00) ~ 2019-09-05(18:0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 합천)	문화예술사업 기획과정 특강 (문화이모작 정부지원 사업)
39	팀장	B	2019-09-06(12:00) ~ 2019-09-06(18:00)	진주문화예술재단	진주남강유등축제 대행사 업체 선정 심사 요청건 참석
40	팀장	B	2019-09-18(14:00) ~ 2019-09-18(20:00)	충남 홍성군청	2019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참석
41	팀장	B	2019-11-05(12:00) ~ 2019-11-05(18:00)	함양군청	2020 함양 산삼향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종합실행계획 자문회의 참석
42	팀장	B	2019-11-12(15:00) ~ 2019-11-12(18:00)	전북 김제	김제문화원 - 선진지 축제 아카데미 참석
43	팀장	B	2019-11-19(17:00) ~ 2019-11-19(21:00)	김천시청	김천시 울곡동주민센터 주민자치대학 강의요청
44	팀장	B	2019-11-27(11:00) ~ 2019-11-27(18:00)	함양군청	2020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회의 참석
45	팀장	B	2019-11-29(16:00) ~ 2019-11-29(21:00)	홍성군청	홍성역사인물축제추진위원 회 자문회의 참석
46	팀장	B	2019-12-17(09:00) ~ 2019-12-17(18:00)	경상남도	2019년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 하반기 평가 간담회 참석
47	팀장	B	2020-01-22(09:00) ~ 2020-01-22(18:00)	경상남도	20~21 경상남도 - 정부지정 예비 문화관광축제 추천 심의위원회 참석
48	팀장	B	2020-01-30(13:00) ~ 2020-01-30(20:00)	충남 홍성군청	2020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진위원회 자문회의 참석
49	팀장	B	2020-02-19(09:00) ~ 2020-02-19(18:00)	경남도청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위원회 참석
50	팀장	B	2020-03-12(13:00) ~ 2020-03-12(20:00)	충남 홍성군청	2020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진위원회 참석 - 축제취소 및 연기에 관한 추진위원 회의
51	팀장	B	2020-03-13(09:00) ~ 2020-03-13(18:00)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 원	시도 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서류 심사
52	팀장	B	2020-03-18(09:00) ~ 2020-03-18(18:00)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 원	시도문화예술지원사업 인터뷰 대면 심사
53	팀장	B	2020-03-24(13:00) ~ 2020-03-24(18:00)	대전 배재대학교	2020 문화재청 문화재야행 현장 평가위원 워크숍 참석 (한국문화관광포럼 주최:대표자 최상규)
54	차장	C	2019-12-10(10:00) ~ 2019-12-10(18:00)	대전 상공회의소	하반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설명회 참석
55	주임	F	2019-11-08(09:00) ~ 2019-11-08(18:00)	인천광역시	군의원 조문 방문
56	주임	G	2019-12-10(10:00) ~ 2019-12-10(18:00)	대전 상공회의소	하반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설명회 참석

2. 벤치마킹 출장내역

연번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결과보고 작성 여부
1	D, E, B, C	2018-01-20(09:00) ~ 2018-01-20(18:00)	경남 함양군	함양곶감축제 (벤치마킹)	부
2	D, B, I, H, C, E	2018-01-23(07:00) ~ 2018-01-23(20:00)	강원도 화천군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2018 벤치마킹	여
3	C, I, D, E, H	2018-02-02(13:00) ~ 2018-02-02(21:00)	충남 공주시	공주 군밤축제 벤치마킹 출장	부
4	D, E, B	2018-03-30(13:00) ~ 2018-03-30(18:00)	충북 옥천군	옥천묘목축제 모니터링	부
5	C, I, D, E, B, H	2018-04-06(13:00) ~ 2018-04-06(18:00)	충남 논산시	논산딸기축제견학	부
6	D, E, B	2018-04-30(10:00) ~ 2018-04-30(18:00)	경상북도 문경새재	축제 선진지 모니터링	부
7	D, E, B	2018-05-10(10:00) ~ 2018-05-10(22:00)	충북 옥천군, 전북 전주시	축제 벤치마킹	부
8	H, C, D, J, E, B	2018-07-20(15:00) ~ 2018-07-20(23:00)	충북 옥천	옥천포도축제 벤치마킹 방문	부
9	H, J	2018-08-29(08:00) ~ 2018-08-29(22:00)	강원도 영월, 충남 보령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벤치마킹	부
10	B, H, C	2018-10-03(06:00) ~ 2018-10-03(22: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유등축제 벤치마킹 방문	부
11	E	2018-11-03(09:00) ~ 2018-11-03(18:00)	충북 청주시 문의면(청남대)	청남대 와인페스티벌 벤치마킹	부
12	D, E, B	2019-01-19(09:00) ~ 2019-01-20(18:00)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 얼음축제 벤치마킹	부
13	D, E	2019-03-20(13:00) ~ 2019-03-20(18:00)	충남 논산시	논산딸기축제 벤치마킹	부
14	B, A	2019-05-09(13:00) ~ 2019-05-09(18:00)	충북 옥천군	지용제 모니터링	부
15	D, F, E, B, A, G, C	2019-05-31(07:00) ~ 2019-05-31(19:00)	경북 청도군	청도군 관광투어 상품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부
16	B	2019-07-19(13:00) ~ 2019-07-19(18:00)	경남 하동군	2019 하동 섬진강재첩축제 모니터링	부
17	B	2019-07-26(09:00) ~ 2019-07-26(18:00)	경남 하동군	2019 하동 섬진강재첩축제 모니터링	부
18	F	2019-07-26(16:00) ~ 2019-07-26(20:00)	충북 옥천군	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 개막식 및 축제장 모니터링	부

연번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결과보고 작성 여부
19	A	2019-07-30(14:00) ~ 2019-07-31(18:00)	전남 장흥군	정남진 장흥물축제 모니터링	부
20	B	2019-09-03(15:00) ~ 2019-09-03(23:00)	원주시 따두 공연장 특설무대	원주다이내믹댄싱 카니발 모니터링	부
21	A	2019-09-20(11:00) ~ 2019-09-20(23:00)	서울시	제1회 서울국악축제 모니터링	부
22	B	2019-09-28(09:00) ~ 2019-09-28(23:00)	경남 거창	거창한마당축제 (경남 대표 축제) 현장 모니터링	부
23	B	2019-10-11(09:00) ~ 2019-10-11(22:00)	부산시	부산 동래읍성 역사축제 모니터링	부
24	F	2019-10-11(16:00) ~ 2019-10-11(22:00)	충북 보은군	보은대추축제 견학	여
25	F	2019-12-14(10:00) ~ 2019-12-14(18:00)	충남 논산시	논산 꽃감축제 견학	부
26	F	2019-12-21(09:00) ~ 2019-12-21(18:00)	경북 상주시	상주 꽃감축제 견학	부
27	E, A	2020-01-12(11:30) ~ 2020-01-12(18:00)	충남 공주시	공주군밤축제 모니터링	부
28	D, F, E	2020-02-10(09:00) ~ 2020-02-11(18:00)	강원도 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 견학	여

【위법부당사항】

- 영동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임직원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취업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조례, 재단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소속기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국내여비를 집행할 경우 출장공무원은 숙박비, 운임, 기타증빙서류(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내역,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등의 입증자료,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1]의 업무 외 사유 부적정 출장내역과 같이 사무국장 A의 경우 명절인사, 김천대학교 운영위원회 참석 등 12회, □□팀장 B의 경우 각종 선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 등 40회, 차장 C의 경우 하반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설명회 참석 1회, 주임 F의 경우 군의원 조문 방문 1회, 주임 G의 경우 하반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설명회 참석 1회 등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부적정하게 출장을 다녀왔으며, 사무국장 A의 경우 제주 들불축제 견학(2020. 3.13. ~ 2020. 3.15.)을 위한 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출장취소를 하지 않았고, [현황2]의 벤치마킹 출장내역과 같이 재단 직원들이 축제 및 관광과 관련하여 견학 또는 벤치마킹을 위하여 총 28회 관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결과보고서는 단 3회만 결재를 맡는 등 출장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여비집행 서류를 확인한 결과 관외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벤치마킹 등 관외출장 시 출장결과보고서 확행 및 업무 외 사유로 출장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출장여비 지급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현 황】

1. 신용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용도	비고
		직	성명		
17.06.14	-	□□팀장	A	축제사업	
17.06.14	-	□□팀장	A	급량비	
17.06.14	-	□□팀장	A	사무국운영	
20.03.09	-	□□팀장	A	관광사업	

2.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현황 : 미작성

3.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고현황 : 미보고

4. 신용카드 대금 연체 현황

결제일	예정금액(원)	출금일	출금금액(원)	비고
합 계	7,084,340		7,085,921	
19.10.01.	7,047,340	19.10.01.	3,216,275	연체료(1,568원)발생
		19.10.02.	2,000,000	
		19.10.02.	474,000	
		19.10.02.	720,000	
		19.10.02.	234,000	
		19.10.02.	404,633	
19.10.01.	37,000	19.10.02.	37,013	연체료(13원)발생

5. 카드사용 결제계좌 발생이자 조치현황

발생일	금액(원)	조치일	비고
합 계	12,602		
17.12.24.	829	17.12.26.	
18.06.24.	1,696	19.04.26.	발생액(5,675원) 조치금액(5,670원)
18.12.23.	3,979		
19.06.23.	3,098	미조치	
19.12.29.	3,000	미조치	

【위법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 규정에 따르면 담당자는 매월 1회 카드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 등 사용철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한다라고 되어있음.
- 그럼에도,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위 [현황 2]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황 3]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황 4]와 같이 결제일까지 계좌입금을 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하였으며, [현황 5]와 같이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적기에 반납조치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및 결제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월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이행 및 결제일 준수, 이자 적기 반납 등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현 황】

○ 유류대 지출내역

[단위 : 원]

연도	지출액	유류카드 이용 시 할인예상금액 (구입액×5.74%)	비고
2017	1,080,000	61,992	2017. 6월 이후
2018	2,179,000	125,075	
2019	2,105,000	120,827	
2020	615,000	35,301	
합계	5,979,000	343,195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

와 시중주유소의 유가를 확인하여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현황]의 유류대 지출 내역과 같이 감사일 현재(2020. 3. 31.기준)까지 유류대로 5,979,000원을 지출하면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사용하지 않았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의 유류대와 비교 없이 유류를 구매하여 343,190원 정도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사용하여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유자금 운용 소홀

【현 황】

○ 자금운영 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사업비 (A)	2,793,894,000	550,000,000	746,948,000	727,166,000	769,780,000	
1)예금 가능액 (B)	1분기	1,956,715,860	-	634,906,130	653,724,360	668,085,370
	2분기	1,950,753,472	352,114,330	559,597,822	537,977,300	501,064,020
	3분기	1,409,829,902	258,563,010	414,683,462	402,540,750	334,042,680
	4분기	840,439,833	181,955,920	223,215,706	268,246,877	167,021,330
금리 (C)	1개월	1%	1%	1%	1%	1%
	3개월	1.05%	1.05%	1.05%	1.05%	1.05%
	6개월	1.15%	1.15%	1.15%	1.15%	1.15%
2)예상이자수입 (D=B×C)	15,278,572	2,924,862	4,345,787	4,457,759	3,550,164	
3)기존이자수입 (E)	1,990,060	203,300	401,760	716,920	668,080	
차액 (F=D-E)	13,288,512	2,721,562	3,944,027	3,740,839	2,882,084	

- 1) 예금가능액(A) : 교부된 총사업비 기준 분기별 잔액(2019년의 경우 사무국운영비와 사업비가 혼재되어 관리되고 있고, 2020년의 경우 1분기 이외의 3분기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아 임의로 평균치를 반영하여 산정)
- 2) 예상이자수입(D) : 각 연도별 1분기 지출액을 제외하고 2분기 예금가능액의 1개월 기준 1.05%, 3~4분기 예금가능액의 6개월 기준 1.15%의 농협 정기예금 이율 적용
- 3) 기존이자수입(E) : 2019년의 경우 사무국운영비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기 어려워 전체예금이자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임의 산정된 예금가능액에 대하여 0.1%의 보통예금이자로 산정

【위법부당사항】

- 영동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단의 재산은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4. 그 밖에 각종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부금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2조, 제12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동군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재무회계규칙」 제72조에 따르면,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단은 사무국의 운영경비에 대하여 매월 세입세출예산을 판단한 후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장기성과 단기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등 예금이자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현황]의 자금운영 현황과 같이 매년 교부되는 사무국 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일반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하여(이를 농협 정기예금 이율로 환산하였을 때 같은 기간 동안 15,278천원의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는 등 예금이자에 대한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13,288천원의 예금이자수입을 증대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여유자금 예탁을 통해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영동사랑상품권 구매·운영 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총사업비 (A)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예금가능액 (B)	6개월 이상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금리 (C)	6개월 이상	1.15%	1.15%	1.15%
예상이자수입 (D=B×C)		972,900	486,450	486,450
기존이자수입 (E)		84,600	42,300	42,300
차액 (F=D-E)		888,300	444,150	444,150

【위법부당사항】

-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방안에는 상품권 사용범위 및 용도별 예산 집행과목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을 예방토록 구매용도, 총구매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관 실정에 맞게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재무회계규칙」 제72조 및 제82조에 따르면, 군수는 유희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상품권은 화폐증권으로서 통화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유가증권으로 분류됨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단은 영동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특성을 반영한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상품권 운영경비에 대하여 매월 세입세출예산을 판단한 후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장기성과 단기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등 예금 이자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상품권 관리 및 사용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황1]의 영동사랑상품권 관리대장과 같이 부적정하게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관리·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 제고 목적을 위배하고 있음.
- 또한, [현황2]의 영동사랑상품권 구매·운영 현황과 같이 예산을 일반 보통예금통장에 교부 받아 보관하고 영동사랑상품권을 일시에 구입하여 보관 사용하다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연말에 일시에 반납하는 등(이를 농협 정기예금 이율로 환산하였을 때 같은 기간 동안 972,900원의 예금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는 등 예금이자에 대한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888,300원의 예금 이자수입을 증대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상품권 관리 및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상품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예상 수요량 파악을 바탕으로 한 적기 구매로 구매 전 여유자금은 예탁을 통해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예산집행(예산전용)의 부적정

【현 황】

○ 예산과목 전용

전용금액	전용목적	전용과목		전용사유
770천원	종합상황실, 축제방송국 컨테이너 이송	단위 사업	[당 초) 영동난계국악축제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설치 이전에 다른 영동난계국악 축제의 예산부족으로 대한 민국 와인축제 예산으로 변경 지급
			[변 경] 대한민국와인축제	

※ 문서번호 (재) 영동축제관광재단-2391 (2019.11.12.)

【위법부당사항】

○ 예산 집행에 있어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정책 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는 통계목 단위로 세출 예산 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전용절차

- 전용요구 (사업부서) ⇒ 심사 (예산부서) ⇒ 결정 (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 (예산부서)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23조 (예비비)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축제재단에서는 2019년 영동난계축제 운영에 있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설치 이전 관련 예산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23조 (예비비) 규정의 의거 예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예산임에도 대한민국 와인축제의 예산을 전용(단위사업간)하여 종합상황실, 축제방송국 컨테이너를 이송하는데 770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와인축제의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예산 전용의 행정절차 (관련부서 협의 - 단위사업간 교부 목적이 다른 사업)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현 황】

1. 유사사업 계약 체결 현황

○ 2017년

계약일	건 명	계약자(대표자)	금액(원)	비 고
합 계	36건		269,519,500	
5.25.	사무실 파티션 추가 구입	-	168,500	9,140,500원
5.25.	이사회 회의용테이블 및 의자 구입	-	5,590,000	
5.25.	상임이사실 사무환경 정비용 홀딩도어 설치	-	1,900,000	
5.26.	책꽂이 임원 임원용 사물함 구입	-	1,482,000	
7.17.	2017 영동포도축제 대도시 홍보	-	10,000,000	30,000,000원
7.17.	2017년 영동포도축제 팸투어 모객홍보 대행	-	20,000,000	
8.02.	영동포도축제 사전홍보용 부채 제작	-	3,000,000	23,410,000원
8.03.	2017 영동포도축제 홍보용 물품 제작	-	14,910,000	
8.21.	2017 영동포도축제 행사 물품 제작	-	5,500,000	
8.18.	영동포도축제장 일원 몽골텐트 및 비품설치	-	20,358,000	34,911,000원
8.18.	영동포도축제장 일원 몽골텐트 설치	-	14,553,000	
8.03.	홍보용 부채 제작	-	8,000,000	73,458,000원
8.14.	가로등 배너 제작	-	1,170,000	
8.14.	가로등배너, 윈드배너 제작	-	3,160,000	
8.14.	가로등배너 제작	-	1,170,000	
8.14.	가로등배너, 윈드배너 제작	-	2,820,000	
8.14.	가로등배너, 윈드배너 제작	-	2,820,000	
8.14.	윈드배너 제작	-	5,640,000	

계약일	건 명	계약자(대표자)	금액(원)	비 고
8.14.	가로등배너 제작	-	1,170,000	
8.14.	가로등배너 제작	-	1,170,000	
8.14.	가로등배너 제작	-	1,170,000	
8.14.	가로등배너, 윈드배너 제작	-	2,820,000	
8.14.	가로등배너, 윈드배너 제작	-	2,820,000	
8.14.	애드벌룬 제작	-	2,400,000	
10.31.	부채 제작	-	5,000,000	
10.31.	홍보현수막 제작	-	2,850,000	
10.31.	홍보용 물티슈 제작	-	2,000,000	
10.31.	KBS가요무대 홍보 현수막	-	3,630,000	
12.28.	홍보물제작	-	9,060,000	
12.28.	홍보물제작	-	14,588,000	
8.29.	돛텐트 외부 설치비(50*25)	-	21,000,000	
8.29.	돛텐트 내부 설치비(등,배선,환풍기)	-	19,000,000	
8.09.	행사장 그늘막	-	7,000,000	
12.01.	영동곶감축제 행사장 AL텐트 입차 설치	-	19,360,000	51,600,000 원
12.12.	2017 영동곶감축제 곶감판매장 AL텐트 입차 설치	-	13,640,000	
12.13.	영동곶감축제 몽골텐트 및 비품 설치비	-	18,600,000	

○ 2018년

계약일	건 명	계약자(대표자)	금액(원)	비 고
합 계	23건		191,962,000	
6.07.	2018.영동포도축제 축하 불꽃쇼 연출 및 특수효과 설치 용역	-	15,000,000	55,000,000 원
6.07.	2018.영동포도축제 특설무대 설치 장치물 입차	-	18,000,000	
6.07.	2018.영동포도축제 특설무대 음향, 영상 장치물 입차	-	22,000,000	
8.09.	2018.영동포도축제 홍보용 윈드배너 설치 및 현수막제작	-	7,520,000	36,026,000 원
8.09.	2018.영동포도축제 홍보용 애드벌룬 설치 및 현수막제작	-	7,336,000	
8.09.	2018.영동포도축제 홍보 현수막 및 배너기 등 제작	-	7,854,000	
8.07.	2018.영동포도축제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	7,938,000	

계약일	건 명	계약자(대표자)	금액(원)	비 고	
8.09.	2018.영동포도축제 홍보용 현수막 및 행사물품 추가 제작비 지급	-	5,378,000		
8.14.	2018 영동포도축제 행사장 비품설치	-	9,150,000	29,580,000원	
8.14.	2018 영동포도축제 행사장 몽골텐트 설치	-	20,430,000		
10.08.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4,850,000	50,446,000원	
10.08.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4,800,000		
10.08.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4,850,000		
10.08.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4,410,000		
10.08.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4,800,000		
10.09.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4,396,000		
10.08.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4,080,000		
10.08.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	-	4,420,000		
10.08.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홍보 제작 및 설치	-	5,340,000		
10.08.	홍보물 제작	-	8,500,000		
12.12.	2018 영동곶감축제 가로등배너, 홍보현수막 제작 및 설치	-	7,320,000		20,910,000원
12.12.	2018 영동곶감축제 홍보현수막, 홍보물 제작	-	7,225,000		
12.12.	2018 영동곶감축제 윈드배너 및 입간판 제작 설치	-	6,365,000		

○ 2019년

계약일	건 명	계약자(대표자)	금액(원)	비 고
합 계	7건		96,948,000	
8.12.	포도축제 행사장일원 비품설치	-	10,940,000	31,240,000원
8.12.	포도축제 행사장 일원 몽골텐트 설치	-	19,300,000	
8.14.	포도축제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드림)	-	1,000,000	
8.27.	포도축제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비 지급	-	14,172,000	27,820,000원
8.27.	포도축제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비 지급	-	13,648,000	
9.2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옥외 홍보물 제작	-	18,568,000	37,888,000원
9.29.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옥외 홍보물 제작	-	19,320,000	

2. 수의계약 체결 시 낙찰률 미적용 현황

○ 2017년

구 분	건 명	금액(원)	계약자(대표자)	비 고
합 계		110,000,000		
용역	행사장 AL텐트 및 그늘막 설치	22,000,000	-	난계축제
용역	제50회 영동난계국악축제 부대시설 설치	22,000,000	-	난계축제
용역	제1회 전국 국악동요 부르기 대회	22,000,000	-	난계축제
용역	영동난계국악축제 경호경비 및 교통관리 용역	22,000,000	-	난계축제
물품	와인잔 목걸이 홀더 구입	22,000,000	-	와인축제

○ 2018년

구 분	건 명	금액(원)	계약자(대표자)	비 고
합 계		110,000,000		
용역	2018.영동포도축제 경호, 경비, 교통관리 용역비 지급	22,000,000	-	포도축제
용역	2018.영동포도축제 체험프로그램 렌탈 용역	22,000,000	-	포도축제
용역	2018.영동포도축제 특설무대 음향, 영상 장치물 임차	22,000,000	-	포도축제
용역	제51회 영동난계국악축제 경호,경비,교통관리 용역	22,000,000	-	난계축제
용역	제2회 전국 국악동요 부르기 대회 추진	22,000,000	-	난계축제

○ 2019년

구 분	건 명	금액(원)	계약자(대표자)	비 고
합 계		88,000,000		
용역	포도축제 경호 경비 교통관리 용역비	22,000,000	-	포도축제
용역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워터스크린 쇼 용역	22,000,000	-	난계축제
용역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영동난계국악단 협연자 섭외 용역	22,000,000	-	난계축제
용역	제3회 전국 국악동요 부르기 대회 용역	22,000,000	-	난계축제

3. 무자격자와의 계약 현황

- 2018년 영동포도축제 특설무대 음향, 영상 장치물 임차용역
 - 계약자: 사단법인□□□(대표:***)
 - 개업일: 2018. 8. 1.(사업자등록)
 - 계약금액: 22,000,000원
 - 계약일: 2018. 6. 7.
 - 준공일: 2018. 8. 21.

【위법부당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은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이때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그럼에도,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위 [현황 1]와 같이 2017. 5. 25. 사무실 파티션 구입 외 3건에 대해 동일인[□□□가구(***)]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1건이 아닌 4건으로 분할계약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60,000원)을 누락하였으며, 2017. 7. 17. 포도축제 대도시 홍보 및 팸투어 모객홍보 대행을 □□□□(***)와 2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포도축제 홍보물품을 제작하면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 동일업체[□□□□(***)]와 계약하는 등 2017년 총32건, 2018년

총23건, 2019년 총7건의 계약에 대해 수의견적입찰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 2017년 행사장AL텐트 및 그늘막 설치 외 4건, 2018년 영동포도축제 경호, 경비, 교통관리용역 계약 외 4건 2019년 포도축제 경호 경비 교통관리 용역 계약 외 3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시담에 의한 가격 조정을 하지 않고 품의액 그대로를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
- 또한, [현황 3]과 같이 2018년 영동포도축제 특설무대 음향, 영상 장치물 임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일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추진하고 대금지급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동일 대표자의 업체와 2019년 영동포도축제 특설무대 음향, 영상 장치물 임차용역을 다시 체결한 바,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로 판단할만한 소지가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포도축제 행사대행용역 변경계약체결 부적정

【현 황】

1. 변경계약체결현황

○2017년

구분	내 용	비 고
계 약 명	2017 영동포도축제 주간행사 대행용역	
계 약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상 대 자	□□ 주식회사(대표자 김**)	
계 약 체 결 일	2017.08.02.	
계 약 금 액	150,000,000원	
변 경 계 약 일	2017.08.08.	
변경계약금액	259,100,000원	증 109.100.000원
변 경 사 유	<p>과업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포도판매장 운영 : 72,000,000원 - 과일종합전시장 구성 : 10,000,000원 - 옥타늄 부스 설치 12,000,000원 - 참가자 캘리그래피 : 3,000,000원 - 전문가 초빙 포럼 : 2,500,000원 - 연예인 홍보단 초청 : 3,000,000원 - 환경정비 : 1,600,000원 - 와인만들기 및 족욕 : 5,000,000원 	

○2018년

구분	내 용	비 고
계 약 명	2018 영동포도축제 행사 대행용역	
계 약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상 대 자	주식회사 □□(대표자 유**)	
계 약 체 결 일	2018.07.05.	
계 약 금 액	150,700,000원	
변 경 계 약 일	2018.08.08.	
변경계약금액	446,150,000원	증 295,450,000원
변 경 사 유	<p style="text-align: center;">과업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포도판매장 운영 : 87,000,000원 - 포도시식 및 홍보관 운영 : 31,000,000원 - 포도따기 체험장 운영비(배송) : 20,000,000원 - 포도밭구입 : 30,000,000원 - 스템프찍기 운영비 : 15,000,000원 - 포도전시관부스 : 13,000,000원 - 개막연극 : 11,000,000원 - 야간경관 조형물 : 22,000,000원 - 공연팀 추가 : 13,200,000원 - 가수추가섭외 : 8,250,000원 - 셔틀버스 : 15,000,000원 - 연예인홍보단 : 3,300,000원 - 모범택시 봉사회 교통통제 : 3,300,000원 - 화장실임대 : 4,400,000원 - 캘리그라피 : 3,500,000원 - 유모차임대 : 1,200,000원 - 포도방송국 행사진행 : 1,500,000원 - 행사진행 및 의전도우미 : 700,000원 - 체험인건비 : 7,700,000원 - 소형무대 : 4,400,000 	

○2019년

구분	내 용	비 고
계 약 명	2019 영동포도축제 행사 대행용역	
계 약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상 대 자	주식회사 □□(대표자 유**)	
계 약 체 결 일	2019.07.24.	
계 약 금 액	232,000,000원	
변 경 계 약 일	2018.08.05.	
변경계약금액	386,000,000원	증 154,000,000원
변 경 사 유	<p>과업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밭 임대 : 30,000,000원 - 포도따기 체험장 운영 : 20,000,000원 - 홍보관 : 13,000,000원 - 포도전시관 설치 운영 : 10,000,000원 - 판매장운영요원 인건비 : 20,000,000원 - 과일전시관 기획 및 운영 : 10,000,000원 - 특설무대 : 28,000,000원 - 대형그늘막 : 9,000,000원 - 야외무대 1 : 7,000,000원 - 야외무대 2 : 7,000,000원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고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하여 기술제안서협상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함.
- 그럼에도, (재)영동축제공관재단에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 영동포도축제 행사 대해용역을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진행하면서 2017년에는 109,100,000원[당초계약 대비 73%증], 2018년에는 295,450,000원[당초계약 대비 196%증], 2019년에는 154,000,000원[당초계약 대비 66%증]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추진하였음. 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추가과업사항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및 낙찰률 적용을 위한 협의과정 없이 추가계약을 진행하였음.
- 또한,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당초 사업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서의 일부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물량의 증가나 과업추가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보다 과하게 증가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보다는 별도발주가 타당하며, 계약일반조건상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을 것임.

- 아울러, 과업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사유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추진하는 협상에의한계약에 대해 본래계약 금액의 두배가까이 증액계약을 추진하면서 추가과업에 대한 제안심의 없이 수의계약 배정하듯이 과업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은 협상에의한계약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심사위원회 심사회피제 운영 및 회의록 작성 소홀

【현 황】

○ 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사업명	심사평가위원회 구성방법	심사위원 선정명단	계약현황	심사회피제 운영 여부
2017	영동포도축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김**, 오**, 이**, 박**, 오**, 신**, 이**	-	부
2017	영동난계국악축 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여**, 이**, 김**, 김**, 전**, 한**, 배**	(사)□□(최**)	부
2017	대한민국외인축 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오**, 전**, 안**, 이**, 권**, 남**, 이**	-	부
2018	영동포도축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오**, 김**, 전**, 오**, 이** 배**, 김**, 이**, 이**	(사)□□□□(한**)	부
2018	영동난계국악축 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오**, 김**, 배**, 여**, 박**, 김**, 박**, 남**, 한**	(사)□□(최**)	부
2018	대한민국외인축 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오**, 김**, 신**, 안**, 이**, 김**, 권** 안**, 김**	(사)□□(최**)	부
2018	영동곶감축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오**, 신**, 박**, 김**, 양**, 이**, 황**, 이**, 차**	□□연구소(차**)	부

연도	사업명	심사평가위원회 구성방법	심사위원 선정명단	계약현황	심사회피제 운영 여부
2019	영동포도축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신**, 김**, 김**, 오**, 양**, 김** 김**, 황**, 이**	(주)□□(차**) (주)□□□(박**) □□(컴퍼니(한**)) (사)□□(최**) (주)□□엔터테인먼트(박**)	부
2019	영동난계국악축 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김**, 배**, 신**, 여**, 박**, 연**, 김**, 한**, 최**	(주)□□(차**) (사)□□(최**)	부
2019	대한민국와인축 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박**, 이**, 김**, 여**, 전**, 진**, 김**, 김**, 임**	-	부
2020	영동곶감축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이**, 신**, 김**, 김**, 남**, 이**, 차**, 이**, 김**	□□연구소(차**)	부

【위법부당사항】

- 영동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4대 축제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군 4대축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 각 축제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추천된 순위에 따라 섭외하여 최종 심사위원을 확정하였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민간위원 위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공모 또는

추천제를 도입하여 각계 우수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직무윤리 사전진단(상설위원회) 및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해충돌방지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사유(제척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해충돌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해촉(선정 배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선정된 심사위원들에 대하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이 지원심사 대상단체 또는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회피·기피하도록 심사회피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는 제척 또는 사전에 심사회피 신청을 받아 심의에 참석배제 하는 등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 중 토의한 사항들에 대한 회의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현황]과 같이 4대 축제 대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중 평가대상 단체 또는 행사와 관련이 있음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사전자료 미비로 위원에 대한 제척, 심의회피 신청 등으로 심사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기준 등 위원들이 심사위원회 중 토의한 사항들에 대한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대행업체 선정 시 심사회피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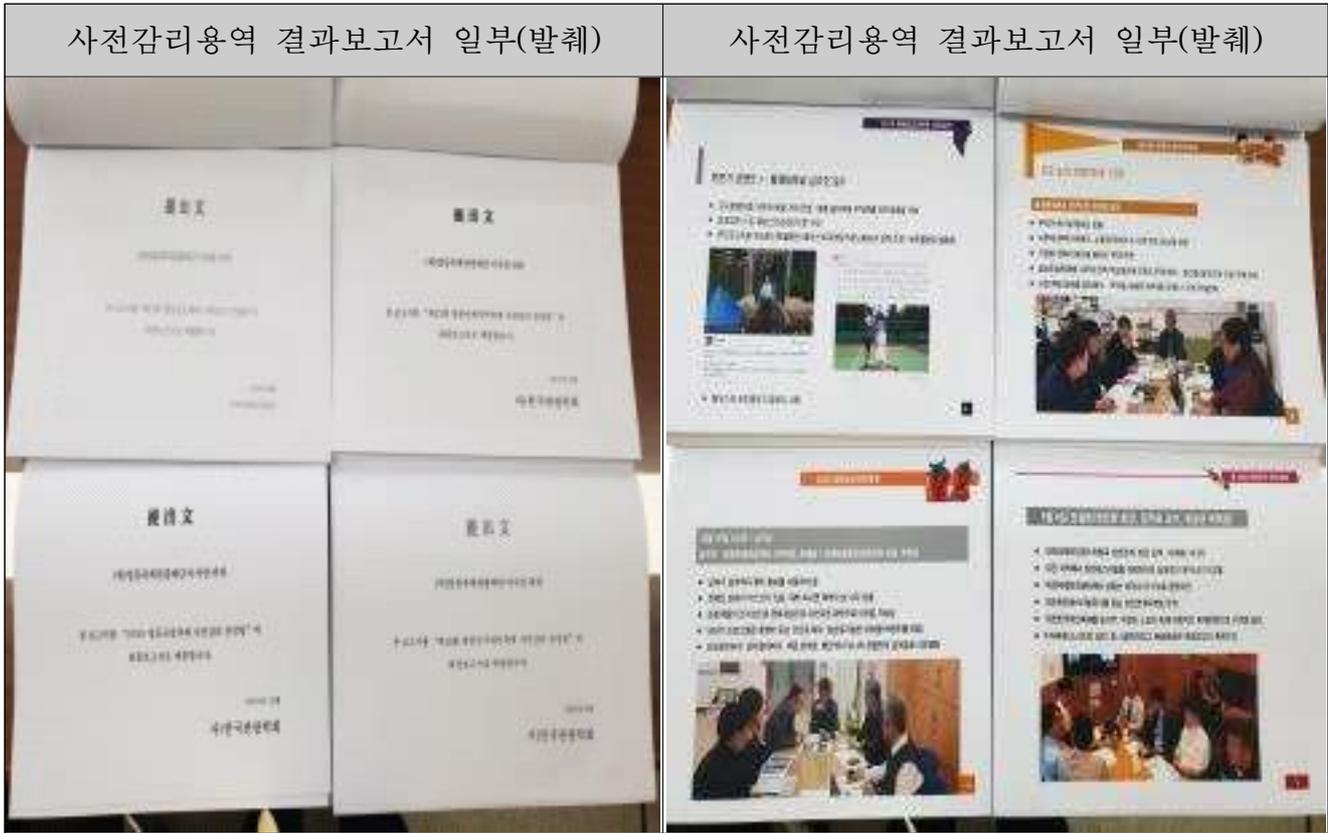
【제 목】 4대 축제 사전감리용역 추진 부적정

【현 황】

1. 2019년 영동군 4대 축제 사전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업체 (대표자명)	품의금액	계약금액	용역 참여자
2019 영동포도축제 사전감리 용역	2019. 7. ~ 2019. 9.31.	□□ (최**)	5,000,000	5,000,000	□□대 김** □□협회 한국지부 정** □□□□포럼 남** □□□□포럼 최** □□대 이**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사전감리 연구 용역	2019. 8.26. ~ 2019.11.30.	(사)□□ (정**)	8,500,000	8,500,000	□□협회 한국지부 정** □□대 김** □□협회 한국지부 최** □□일보 이** □□공사 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정**
제10회 대한민국와인축제 사전감리 컨설팅	2019. 8. ~ 2019.11.30.	(사)□□ (정**)	5,000,000	5,000,000	□□협회 한국지부 정** □□대 김** □□협회 한국지부 최** □□일보 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정** □□공사 김**
2020 영동곶감축제 사전감리 컨설팅	2019.12. ~ 2020. 1.30.	(사)□□ (정**)	5,000,000	5,000,000	□□협회 한국지부 정** □□협회 한국지부 최** 파워블로거 배**

2. 2019년 영동군 4대 축제 사전감리용역 결과보고서



【위법부당사항】

- 영동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2019년 영동축제관광재단 주요사업추진계획(2018. 9.12. 임시이사회 승인)을 수립하고 4대 축제에 대하여 축제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축제경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문체부 정책과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창출하는 토대 마련을 위한 4대 축제 사전 컨설팅에 대한 신규사업을 계획하였음.
- 그러나,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안 의결 결과 재단에서 제출한 2019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250,000천원이 삭감되어 수정가결되었고, 본예산안 삭감조서에는 문체부 정책과제 도입을 위한 4대 축제 사전 컨설팅사업 40,000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재단 사업예산에는 사전컨설팅 감리용역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음.
- 이후, 재단에서는 예산 삭감에 따라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축제별 신문광고, 현수막 제작 등으로 집행이 계획된 각 축제별 홍보 관리비 예산을 4)전용하여 [현황1]의 2019년 영동군 4대 축제 사전감리 용역 현황과 같이 23,500천원을 집행하였음.

- 이에 따라, 재단에서 제출한 [현황2]의 4대 축제 사전감리용역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각 축제별 사전감리용역으로 계약을 발주하였으나, 감리와 축제와의 상관관계가 없고, 기존에 추진해온 평가결과용역을 통해서 각 축제별 마케팅 전략, 발전방향, 콘텐츠개발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으며, 용역계약업체 및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대부분이 동일학회 및 동일인으로 과업의 결과 역시 용역의 결과로 보기에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자문회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내용으로 대부분 축제에 반영할 수 없거나 용역이 아니라도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를 포함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 등이 미흡하여 해당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4대 축제에 대한 사전컨설팅 용역을 강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단순 자문회의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도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착수계, 완료계, 준공

4) 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이 가능하다.

검사조서 등 계약과 지출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생략 한 채 용역의 완성
과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경호·경비 및 교통관리 요역(계약)집행 부적정

【현 황】

○ 2019년도 축제별 용역(계약)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축 제 명	계 약 업 체	계 약 일 자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영동포도축제 ('19.08.29-09.01)	(주)□□ 경 호 (대 전)	'19.06.21	22,000	'19.06.21-09.01 (73일)
영동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19.10.03-10.06)	(주) □□□□경 호 (대 구)	'19.09.23	19,600	'19.09.23-11.30 (69일)
영동곶감축제 ('20.01.03-01.05)	(주)□□경 호 (대 전)	'19.12.18	9,900	'19.12.18-01.31 (45일)

○ 2019년도 축제별 용역완료보고 현황 (단위 : 천원)

축 제 명	청구(지급)액	실제 용역기간	지 적 사 항
영동포도축제 ('19.08.29-09.01)	22,000	'19.08.27~' 19.09.02 (18일)	- 산출근거 작성 부적정 (계약체결 부적정) - 일자별 근무 감독자 확인 사항 없음 (감독소홀)
영동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19.10.10-10.10)	19,600	'19.09.23-' 19.10.09 (17일)	- 산출근거 작성 부적정 (계약체결 부적정) - 일자별 근무 감독자 확인 사항 없음 (감독소홀)
영동곶감축제 ('20.01.03-01.05)	9,900	'19.12.21~' 20.01.07 (18일)	- 산출근거 작성 부적정 (계약체결 부적정) - 일자별 근무 감독자 확인 사항 없음 (감독소홀)

○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교통관리 용역(계약) 집행현황 (단위: 천원)

축 제 명	계 약 업 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용역기간
영동난계국악축제 ('19.10.03-10.06)	□□파트너스(주) (대구)	'19.09.23.	10,400	'19.09.23-11.30 (69 일)

○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교통관리 용역(변경) 현황 (단위: 천원)

축 제 명	청구(지급)액	실제 용역기간	지 적 사 항
영동난계국악축제 ('19.10.03-10.06)	10,400	'19.10.01-10.15 (15일간)	- 산출근거 작성 부적정 - 일자별 근무 확인사항 없음 (축제재단)

【위법부당사항】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 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축제재단에서는 2019년도 축제별 경호·경비 용역 업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실제용역 기간이 영동포도축제는 18일 ('19.08.27~09.02), 영동난계국악축제는 17일(19.09.23~10.09), 영동꽃감 축제는 18일('19.12.21~' 20.01.07)간 용역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체결 후 용역에 대한 감독자는 용역의 진행에 있어 당초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현황에 대하여도 점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계약 담당자는 당초의 용역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의 용역 완료보고서를 용역업체로 부터 제출 받아 서류확인 후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19년 영동난계국악축제 교통관리 용역기간('19.09.23.~11.30)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용역업체 □□파트너스(주)와 계약체결 하였으며, 실제 용역기간('19.10.01~10.15)중에 교통관리용역 이행 여부에 대한 축제재단의 점검 또는 확인내용 없이 용역사 □□파트너스(주)에서 제출한 용역 완료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용역비 10,4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영동축제관광재단 수익금 운영 부적정

【현 황】

1. 수익금 내역

[단위 : 원]

연도	축제명	수익사업명	수익금	비고
합계			143,259,889	
2017	영동난계국악축제	행사장임대수익	8,000,000	
2017	대한민국와인축제	판매수익	20,159,000	
2017	영동포도축제	판매수익	10,016,050	
2017	영동포도축제	기타수익	171,550	
2018	영동포도축제	행사장임대수익	9,531,100	
2018	영동포도축제	판매수익	4,405,000	
2018	영동포도축제	기타수익	502,700	
2018	영동난계국악축제 및 대한민국와인축제	행사장임대수익	15,350,000	
2018	대한민국와인축제	판매수익	22,461,337	
2018	영동꽃감축제	행사장임대수익	3,620,000	
2018	영동꽃감축제	판매수익	758,325	

연도	축제명	수익사업명	수익금	비고
2018	예금이자	이자수익	11,725	
2019	영동포도축제	행사장임대수익	19,450,000	
2019	영동포도축제	판매수익	3,947,830	
2019	영동포도축제	기타수익	655,800	
2019	영동난계국악축제	행사장임대수익	5,300,000	
2019	대한민국와인축제	행사장임대수익	950,000	
2019	대한민국와인축제	판매수익	17,222,346	
2019	영동꽃감축제	행사장임대수익	650,000	
2019	예금이자	이자수익	57,126	
2019	국세환급	기타수익	10,000	
2020	영동꽃감축제	기타수익	30,000	

2. 수익금 부적정 사용 내역

[단위 : 원]

연도	사용내역	사용금액	추진절차	비고
합계		14,127,560		
2019	직원 대학원 진학 지원금	5,988,000	제26차 임시이사회 의결	김**외 1
2019	자산취득비-사무용가구 구입	4,127,560	제27차 임시이사회 의결	
2019	직원 대학원 진학 지원금	4,012,000	제26차 임시이사회 의결	김**외 1

【위법부당사항】

- 영동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의 재산은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4. 그 밖에 각종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부금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이하 “재단 정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재단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단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제15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있으며, 제16조에 따라 연 1회의 정기 이사회 외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11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살펴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며,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복리후생비의 편성기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주택대출금, 학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단은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운영 할 때에는 재단 정관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고 고유목적 사업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모든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였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방침결정 등의 검토 없이 제26차 임시이사회(2019. 1.16.)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단 수익사업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단 사무국 직원의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 10,000천원을 집행토록 임시이사회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제27차 임시이사회(2019. 2.12.) 심의를 통하여 “재단 수익금 지출 승인(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무국 사무용가구(캐비닛, 파티션 등) 구입 명목으로 7,000천원을 집행토록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음.
- 또한, 재단은 [현황]과 같이 수익금을 사용하면서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집행해야 하는 사무용가구 구입예산 4,127,560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복리후생 지원 범위를 벗어난 재단 사무국 직원의 대학원 진학 지원금 10,000,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재단 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맞지 않게 수익금 운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요구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위임전결규정 사항 위반

【현 황】

사업명	사업비 증액 (천원)	증액 사유	최종결재	위임전결 규 정
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행사운영체 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0 증액 : 125,970천원 - 당초 : 470,529천원 - 변경 : 596,500천원	- 행사장 운영부스 변경 - 파라솔 및 테이블 임차 - 이동화장실 설치 운영 - 특설무대 설치 및 운영	상임이사	이사장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1760 (2019.09.10.)

【위법부당사항】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제①항의〔별표〕에 따라 예산집행(업무명) 1.추정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제조,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과 그 외의 것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
- 영동축제재단에서는 제52회 영동난계국악축제 행사운영 업체 사업비 (변경) 검토보고 시 사업비 증액(125,970천원) 대상은 재단 위임전결 규정상 이사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오병택)의 전결로 처리하는 등의 재단 위임전결 규정 사항을 위반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2019년 축제별 대행사 선정 지연

【현 황】

축 제 명	축제기간	기본계획 수립일자	대행사 선정	대 행사 준비기간	대 행사 선정지연정도
영동포도축제	‘19.08.29~09.01 (4일간)	2019.02.26.	‘19.07.08. (주)□□□	2개월 정도	3월
영동난계국악축제	‘19.10.10.~10.13 (4일간)	2019.03.15.	‘19.07.05. (주)□□□□	3개월 정도	4월
와인축제	‘19.10.10.~10.13 (4일간)	2019.03.15	‘19.07.15 (주)□□□□□	3개월 정도	4월
영동곶감축제	‘20.01.03.~01.05 (3일간)	2019.10.25	‘19.11.06. (주)□□□□□	2개월 정도	1월

【위법부당사항】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제2조(목적) 영동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관광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영동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을 함.
- 효율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기본 과정은 기본계획 수립, 대행사 선정, 실행계획 수립, 축제개최의 순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행사로 하여금 축제의 전반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여 축제개최 3월전 실행계획이 완료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축제재단에서는 축제별 기본계획을 연초(1-2월)에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행사를 조기 선정하여 대행사에서 새로운 관광자원의 활용과 축제의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축제 준비가 되어 축제개최 2~3월 전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축제재단은 축제기본계획 수립 후 대행사를 바로 선정하여 대행사와 협의하여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하여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축제준비 과정에 있어 축제개최 2~3월 전에 축제재단에서 대행사를 선정할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대행사가 조기에 선정되어 축제준비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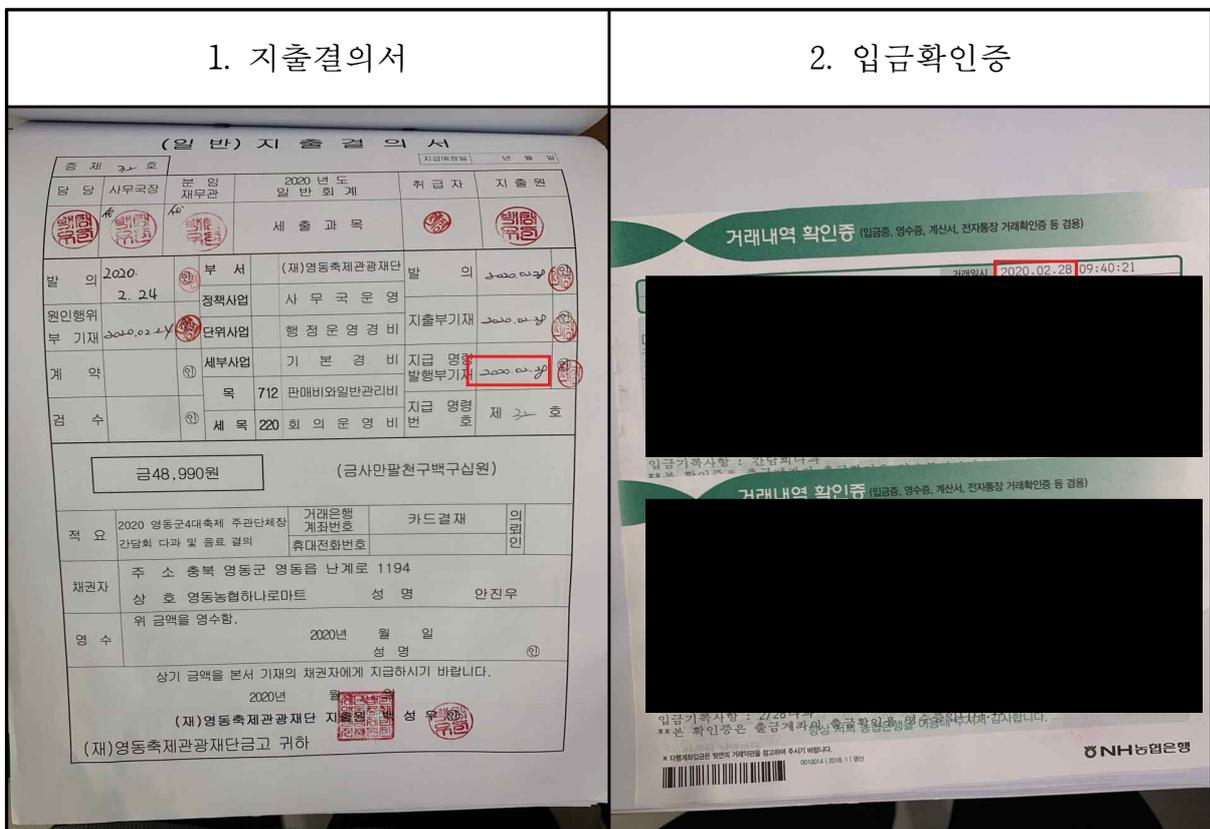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현 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처리 현황



【위법부당사항】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예산회계규정」 제6장 지출 제47조(지출의 원칙) 및 제49조(지출결의서)규정에 따르면 금전의 지출은 예산집행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 절차를 밟아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규정의 준수여부 및 증빙서류의 요식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재)영동축제관광재단의 지출절차를 보면 사업담당자가 지출품의(전자결재)를 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후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회계담당자는 대면결재를 통해 재무관 및 지출원의 날인을 받아 출금증을 수기로 작성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채주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지출단계별 입력 및 승인절차 없이 지출 후 일괄입력하는 방식으로 장부정리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
- 수작업 방식으로 지출을 처리하다보니 [현황 1]과 같이 지출결의서를 시스템 출력물이 아닌 수기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황 2]와 같이 출금증 작성과정의 오류로 인해 지출금액이 잘못 표시되어 해당 지출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추가 입금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상기와 같은 지출관련 수기결재, 사후 프로그램을 통한 대장정리 및 직접 은행방문 지출 등의 업무처리방식은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시스템 결재를 통한 관리자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회계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음.

【처분내용】

-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회계사고 방지 및 지출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